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, 정부세종청사 부속시설인 복합편의시설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7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호, 2020. . 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중 총계 “130”을 “133”으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“129”를 “132”로 하며, 일반직 계 “128”을 “131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“11”를 “12”로 하며, “행정주사·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“16”을 “17”로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“3”를 “4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131”를 “134”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“130”을 “133”으로 하며, 일반직 계 “129”를 “132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“11”를 “12”로 하며, “행정주사·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“16”을 “17”로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“3”을 “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30</u>	<u>133</u>	+3
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 무원은 제외한다)	<u>129</u>	<u>132</u>	+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28</u>	<u>131</u>	+3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<u>11</u>	<u>12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또 는 시설주사	<u>16</u>	<u>17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<u>3</u>	<u>4</u>	+1
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2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31</u>	<u>134</u>	+3
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 무원은 제외한다)	<u>130</u>	<u>133</u>	+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29</u>	<u>132</u>	+3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<u>11</u>	<u>12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공업주사 또 는 시설주사	<u>16</u>	<u>17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<u>3</u>	<u>4</u>	+1
·	·	·	

	.		.		.	
--	---	--	---	--	---	--